

2024. 1. 25(목). 10:00  
제300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하여 대형 건축물 등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해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관심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관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경관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안 제8조제1항)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정비 및 추가(안 제26조제1항, 제2항)
  - 현행 경관심의 대상 공공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부합하도록 정비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및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의 건축물 심의 대상 추가

-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경관심의 규정 신설(안 제26조제3항)
- 경관위원회 간사와 서기의 인원 및 업무를 규정(안 제31조제2항제6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경관법 시행령」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및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 나. 부서협의 결과

- 협의기간 : 2023. 9. 20. ~ 2023. 11. 23.
-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원안 가결

###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20.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상급기관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도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도시 및 지역 환경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도시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등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주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기 위한 개정 사항은 우리 시의 경관개선 및 조성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됨
  - 「경관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경관 관리 등을 위해 경관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검토된 만큼 상위법 저촉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건축물 대상은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류 및 규모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하 생략)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